

정책연구 2009-13

어촌종합개발사업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2009. 11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현상과 해양오염의 심화에 따른 어장생산성 및 어획물의 상품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업 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수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어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격상 2001년부터는 민간 소득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광지라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어촌지역의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개보수 등의 특정사업에 지나치게 치우쳐진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 보고, 사업추진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제주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향후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에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훌륭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유 덕 상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3
II.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4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격	4
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의 및 목표	5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	7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	9
5.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	10
6.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12
7.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성과	15
8.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17
III.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21
1.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21
2. 제주지역 경제과급효과 분석과정	24
3. 제주지역 경제과급효과 분석결과	28

IV. 문제점	31
1.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1
2. 사업집행 및 제도적 문제점	36
V. 개선방안	38
1. 경영측면의 개선방안	38
2. 부실사업의 개선방안	40
3.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검토	43
4. 어촌관광정보망 확보방안	46
5. 어업인의 관광객 수용능력 강화	47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48
<input type="checkbox"/> 부 록	49
1.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설	51
2. 제주지역 주요 해양수산 통계	59

I. 서론

1. 연구 배경

- 어촌은 어업자원 감소와 해양오염의 심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업의 쇠퇴와 함께 점차 삶의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문화수준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젊은이들은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은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마저 일어나는 등 국토개발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의 우리 어촌 현실을 직시하면 기존의 노력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그 동안의 개발계획 및 추진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 즉 다양화된 개발수요를 수용하고 개발효과 제고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각종 사업 및 개발부분을 통합한 개발 방식으로 그 동안의 불균형적인 국토개발을 방지하고 낙후된 어촌지역의 소득수준을 도시 근로자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향상시켜 어촌의 경쟁

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삶의 질이 높은 정주어촌건설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고,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추구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종전의 어느 개발계획보다 어업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사업시행이 초기단계이고 효율적인 사업모델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어촌에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5% 보조사업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한 그 어느 사업보다도 투자성과 확보방안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제주도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부실 운영 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방법

- 어촌종합개발은 '94년도부터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투자하는 관 주도의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사례는 일천한 실정이다. 다만 중·장기 계획('94~2004)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성과 확보방안에 대한 평가·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의 추진 시기가 짧고, 기존에 연구되어진 자료들이 부족하지만 구 해양수산부, 관계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발표된 유사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금의 어촌 현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 성격, 범위 등을 인용 서술하였고, 제주도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도출은 집행주체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축적된 내부 자료를 본 연구내용에 반영하였다.

4. 연구 구성

- 제1장에서는 본 연구과제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2장에서는 본 연구과제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도입 및 추진경위 및 제주도에 추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 제3장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주는 직·간접적 편익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영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제4장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이용실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 제5장은 그간 추진되어온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고려할 때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Ⅱ.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격

-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크게 '어촌', '종합적' 및 '개발'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된다.
- 첫째, 그 사업대상 지역을 '어촌'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촌이 도시(상업 및 공업) 및 농촌지역과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정부정책상 그러한 구별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둘째, 사업방식이 개별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및 문화정책 등의 개별정책이 아님과 동시에 해당지역에서의 수산정책 단독이 아닌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연계시킨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종합정책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농어촌에 대한 정부정책이 주로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량 증대정책에 치중하여 어촌 전체의 절대적인 어가소득의 증대는 가져왔으나,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구와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물론 어업인들 간에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생산기반 또한 더욱 나빠져 어촌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여건은 날로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따라서 단기적인 소득증대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어촌에서 어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도시인과 차별성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내용이 '개발'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발전' 또는 '성장'과 비교되는 용어이다. 개발은 정책대상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정의하면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및 문화적으로 특수한 특성을 지니면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사회경제 및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따라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크게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정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내포한 복합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의 및 목표

- 어촌종합개발의 정의를 내려 보면 어촌지역주민의 공동 또는 협동적인 노력과 정부 및 외부기간이 지원으로 어촌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주민 개개인, 또는 지역 전체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어촌지역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활동의 공동체적인 기초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어촌종합개발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최상호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갈 자주적인 주민조직을 개발하고 이를 육성
- 2) 효과적인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조성
- 3) 생산 증대 및 소득 증대
- 4) 보다 편리하고 사람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
- 5) 번영과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정신자세,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대화된 의식 및 책임의식 형성
- 6) 도시와 농촌, 선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를 정책 차원에서 줄임
- 7)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 이상의 어촌종합개발이 추구해야 할 정의 및 목표를 참고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검토해 보면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민조직의 개발 및 육성 부문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실제로 현재 문제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사후 관리 및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인력육성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

-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개발계획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권과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개발체계가 이루어진다. 의미상 어촌의 어업과 관련된 사업개발을 포괄하며, 공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어장공간 조성, 어항지구개발, 배후어촌개발, 어촌관광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다.
- 어촌종합개발은 <표 2-1>과 같이 그 종합성에 있어서 기능공간의 통합적 개발, 사업부문의 통합, 개발행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본래의 종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2-1> 어촌종합개발의 성격

성격	내용
통합적 공간개발	·어장(생산공간)-어항(생산기반)-어촌(생활정주환경)의 기능연계
사업 및 부문의 통합	·사업(수직적 통합) : 자원관리-생산-가공-판매(이외에 어선건조와 수리시설)사업들의 통합 ·개발부문(수평적 통합) :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사회부문의 통합
개발행위 통합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민, 민간 등 모든 개발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와 긴밀한 협조

-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세부대상사업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것으로 <표 2-2> 와 같다.

<표 2-2> 어촌종합개발의 사업별 세부대상사업

구분	세부대상사업		비고
	사업별	대상사업	
생산기반시설	어선계류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장 ● 물양장 ● 외곽시설(방파제 등) ● 계류시설(선과장 등) ● 준설 및 암반 제거 ● 하역시설(크레인 등) ● 용수시설 ● 어선간이수리소 	
	해안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장 진입로 ● 해안도로 ● 어장진입로(갯벌로) ● 해안조명시설, ● 호안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되는 해안사방 및 보전시설사업 제외
소득기반시설	육상수산물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장 ● 어업용창고 ● 산지가공처리시설 ● 냉동냉장시설 ● 사료저장고 ● 어민대기소 및 탈의실 	단순부지조성사업은 불가
	유통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간이위판장 ● 임시축양수조 	어항부지내 시설시 가능
	어촌관광기반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소공원 ● 낚시터 조성 ● 체험어장 ● 어촌전통문화시설 정비 등 	유료시설인 경우 불가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어촌환경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시설 ● 상하수도 ● 관정 ● 공동화장실 ● 어선간이수리소 ● 쓰레기소각소 ● 폐유수거탱크 ● 정화처리시설 ● 폐각분쇄처리장 	어촌환경시설사업은 환경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함
	복지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회관 ● 어업인복지회관 ● 경로당 ● 해안소공원 	어촌계획의실, 경로당, 도서실 등의 복합시설 가능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2002년도)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은 지역개발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국토 공간으로서 소외되어온 것이다. 더구나 수산정책 또한 어촌문제와는 별개로 인식되어 수산물의 생산과 가격유지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90년대 들면서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간의 농어촌에 대한 불균형 투자와 인구집중에 의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농어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UR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이 수산부문에 밀려오면서 생산과 가격 위주의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 수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조절과 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또 다른 통상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의 종사자인 어업인, 어업인의 생활터전인 어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산인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어업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현실화되어 갔으며 어촌이 국토의 말단부에 위치한 소외공간이 아니라 수산인의 생활터전은 물론 도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라는 시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¹⁾.
-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발생과 동시에 뒤따라야 할 투자는 여전히 재원부족이라는 현실상황논리에 묶여 투자규모가 미흡한 수준에 머

1)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1999, pp.116~117.

물려 있었다. '88년도부터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어촌의 전통적인 조직단위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개발방안이 마련되어 어촌계당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실시되었다. 투자에 따른 효과도 있었지만 어촌계간의 효율적인 상호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가운데 '93년 12월 UR은 타격을 보았고 WTO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본격화되자, 그간의 투자부족에 대한 보상차원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어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농특세에 의해 어촌과 어업인의 복지와 새로운 기반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어촌개발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명명된 어촌계별·권역별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추진된 것이다.

5.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

- 어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개발사업이라 하면 1970년대의 어촌 새마을운동을 들 수 있고, 1988~1992년까지 실시된 어촌종합개발 시범사업, 그리고 1994년부터 실시하게 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970년대의 어촌 새마을운동의 주 내용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전국의 개별 어촌부락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규모 어항건설, 공동어장 개발, 마을구관장 및 어민회관 신축, 지붕개량 및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투자액의 소규모이고, 산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해당 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도리어 소외감을 맛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1988~1992년의 어촌종합개발 시범사업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개발사업으로서 종전의 개발사업과 비교시 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화되었다. 5개년간 총 21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약 19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당 약 8,600만원이 소요되었고, 투자내역은 어선계류(54%), 해안시설(18%), 육상시설(15%), 자원조성(12%)으로서 어업생산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그 대상이 어촌계로 한정됨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 및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권역중심의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 둘째, 사업단위당 사업비가 소규모이므로 적정시설량의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어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사회복지적 측면이 도외시된 개발로서 종합적인 개발모형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어업인 자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개발 되었다는 점이다.
- 농특세 재원에 의하여 '94년도부터 추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여러 개의 어촌계를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총 160개 권역)하고 선정된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1994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투자재원 5,432억원으로 확보한 후, 1995년도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당해 연도에는 21개 권역에 52,5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1년도까지 109개 권역(완료85,

계속24)에 326,5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원래는 목표 연도가 2004년 까지이나 세수 부족 등에 의하여 마무리가 어려워 <표 2-3> 과 같이 2단계인 2008년까지 연장 계속 지원되고 있다.

<표 2-3> 어촌종합개발의 사업별 세부대상사업

구분		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2008
사업량		160개 권역	109개 권역	30(24)개 권역	37(22)개 권역	30개 권역
사업비	계	543,170	326,530	34,980	43,140	138,520
	국고	271,585	163,265	17,490	21,570	69,260
	지방비	244,426	146,938	15,741	19,413	62,334
	자부담	27,159	16,327	1,749	2,157	6,926

자료 : 국토해양부,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6.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 어촌개발사업의 실시모형은 어촌의 생산, 생활 및 사회활동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며, 어장, 어항, 어촌의 3대 요건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권역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전국의 1,685개 어촌계를 160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1권역당 평균 35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며, 이를 향후 10년간(1995~2004까지) 계속하기로 하는 기본계획 하에서 추진해왔다.

- 개발 대상권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어촌계수, 어선세력, 어업가구수, 어업인구, 어업생산량 등 감안
 - 어촌계 평균소득,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우선순위 부여
 - 소규모권역, 도시계획지역, 국토종합개발계획지역 제외
 - 도시주변 어촌 및 도서지역 비어업인 상주지역 후순위 개발

- 연도별 시·도별 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어촌종합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중 도시계획시행지역,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 200가구 이하 소규모 세분권역 등을 통폐합하여 권력을 조정하되 시·도별 지원 권역은 매년 사업비의 확보 정도를 감안하여 배정
 - 어촌계 평균소득, 어촌계수, 어업소득을 감안하여 시·도별 차등지원
 - 기 지원실적, 개발잠재력,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참작하여 배정

- 권역 선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시행지역은 어촌종합개발 대상 권역에서 제외
 - (예) 도농통합 이전의 시 지역 소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 권역
 도농통합시 지역 인접 어촌계(4km이내, 도서지역 제외)
 시·읍지역내 어업의존도가 낮은 어촌계(전업어업인수, 어업소득이 낮은 어촌계)
 -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예정지구내 권역 제외
 (예) 공업용지 및 농업용지 개발로 매립, 간척 예정지역
 - 규모 또는 어업인 수가 현저히 적은 권역은 인근 권역과 통합
 (예) 대상권역이 법인어촌계가 아님에도 1개 어촌계로 구성된 권역

대상권역의 어가수가 200가구 이하로 세분화된 지역
 개발대상 1개면에 2개 이상의 종합개발권역을 신청한 시·군은
 대상면의 수와 동일하게 조정

<표 2-4> 시·도별 권역 설정 현황

시도별	신청		선정		제외		신청 제외 어촌계
	권역수	어촌계수	권역수	어촌계수	권역수	어촌계수	
계	225	1,155	160	836	65	319	524
부산	4	18	2	8	2	10	31
인천	7	30	7	29	-	1	18
울산	4	19	4	19	-	-	-
경기	4	9	2	6	2	3	30
강원	15	62	13	47	2	15	-
충남	9	47	9	42	-	5	20
전북	11	55	7	29	4	26	-
전남	90	435	57	318	33	117	374
경북	22	133	15	88	7	45	4
경남	43	274	31	186	12	88	22
제주	16	73	13	64	3	9	25

자료 : 수산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1995

- 사업추진방식은 수 개의 어촌계를 수산업의 형태, 어장이용의 특성, 교통·지리 및 자연환경 등 경제지리학적 특성에 쫓아 이를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묶은 계획적 개발지역(planning region)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제기능의 종합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자방식의 중심지 어촌개념(central fisheries community)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사업추진체계는 어민개발수요를 토대로 정부가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시·도의 사업승인 및 감독하에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실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bottom-up(상향식 지원체계 시스템)방식에 의하고 있다.
- 재원확보는 농특세를 주된 재원으로 이를 특별회계화 하여 정부 50%, 지방자치단체 45%, 대상어촌 5%의 부담으로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고보조(50%), 지방교부금(45%), 어민자담(5%)으로 구성된 재원확보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7.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성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의 어촌은 소득증가, 고용창출, 기술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 증대, 자연경관 개선, 관광객 유치, 도시민 유입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나타난 직접적 효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소득증대효과를 들 수 있다.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3년과 5년이 지난 1998년의 어촌계 평균소득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증대효과를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실시지역이 42.1% 증가한 반면 미실시지역은 30.9%에 불과했다.(<표 2-5> 참조)

<표 2-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소득증대효과

단위 : 천원, %

시도	개발사업 실시지역			개발사업 미실시지역		
	1993	1998	증감율	1993	1998	증감율
전국	12,597	17,896	42.1	12,559	16,446	30.9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현황”

- 한편,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나타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지출된 투자비를 귀속산업 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건설 등 어업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농림수산토목 부분의 지출이 전체 투자비의 66%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관광횃집, 공동작업장 등 소득사업 시설이나 생산지원시설 건설을 위한 철근철골조 비주택 건축 부분의 지출이 전체의 27%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일반기계 및 수송장비에 대한 지출은 각각 2.4%와 1.5% 정도로 나타났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나타난 파급효과에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업목적에 적합한 효과는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1994~2002년까지 115개 권역에 대하여 약 3,5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약 6,963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부가가치는 3,064억원, 총 고용유발 효과는 9,911명을 창출하였다.

<표 2-6>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경제파급효과(1994~2002)

구 분	효 과	전체권역효과	권역당 효과
'94~'98	투자액(백만원)	206,887	3,391.6
	생산유발효과(백만원)	401,531	6,852.5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185,630	3,043.1
	고용유발효과(명)	7,516	123.0
'99~'02	투자액(백만원)	145,070	2,686.5
	생산유발효과(백만원)	294,779	5,458.9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120,741	2,235.9
	고용유발효과(명)	2,395	44.4
합계 '94~'02	투자액(백만원)	351,957	3,060.4
	생산유발효과(백만원)	696,310	6,054.9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306,371	2,664.1
	고용유발효과(명)	9,911	86.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 연구”, 2004

8.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사업개요

○ 사업량 : 16개 권역 · 84개 어촌계

○ 사업비 : 58,854백만원(균특 33,333, 지방비 23,046, 자담 2,475)

(권역당 3,500백만원, '07년부터 권역당 5,000백만원 범위내)

※ 지원율(균특) : 공공부분 균특 70%, 지방비 30%

민간부분 균특 70%, 지방비 25%, 자담 5%

○ 사업기간 : '94~'14년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등

○ 집행주체 : 공공부문(행정시), 민간부분(어촌계)

추진실적(1단계 사업완료)

○ 지원실적('94~'05) : 13개 권역(64개 어촌계) · 43,854백만원

○ 사업지구 : 구좌·조천, 안덕·대정, 한경, 추자, 성산동부, 남원서부, 애월, 성산서부, 남원동부, 조천, 표선, 우도, 한림서부

<표 2-7>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권역별	대상어촌계	사업량	사업비	재원내역			연도별
				균특	지방비	자담	
13개 권역	64개 어촌계	192개사업	43,854	22,833	19,296	1,725	
구좌·조천	하도의 3	14개사업	2,556	1,265	1,139	152	'94~'95
안덕·대정	하모외 4	28개사업	3,516	1,750	1,575	191	'95
한경권역	고산외 6	22개사업	3,543	1,750	1,575	218	'96
추자권역	신양외 4	19개사업	3,572	1,750	1,575	247	'96
성산동부	시흥외 3	8개사업	3,519	1,757	1,655	107	'97
남원서부	하례외 4	12개사업	3,515	1,735	1,631	149	'97~'98
애월권역	애월외 6	15개사업	3,482	1,741	1,584	157	'98~'00
성산서부	온평외 4	5개사업	3,626	1,808	1,664	154	'99~'01
남원동부	신흥외 3	18개사업	3,006	1,495	1,429	82	'00~'02
조천권역	신촌외 4	23개사업	3,260	1,628	1,570	62	'01~'03
표선권역	표선외 3	16개사업	3,222	1,611	1,554	57	'02~'04
우도권역	천진외 3	25개사업	3,532	1,749	1,674	109	'03~'04
한림서부	월령외 4	10개사업	3,500	2,800	673	27	'05

2009년 추진

- 사업량 : 2개 권역(구좌서부, 대정서부 권역)
- 사업비 : 1,292백만원(균특 900, 지방비 379, 자담 13)
 - 구좌서부 : 3개사업 · 715백만원(균특 500, 지방비 208, 자담 7)
 - 대정서부 : 2개사업 · 577백만원(균특 400, 지방비 171, 자담 6)
- 세부사업내용
 - 구좌서부권역 : 동북 선착장 및 행원 물양장시설, 김녕 해녀복지시설
 - 대정서부권역 : 가파 돌미역건조시설, 가파 상동항물양장시설
- ※ 9월말 현재 : 2개소 완공(행원 물양장시설, 가파 상동항물양장시설),
3개소 추진중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

<표 2-8> 구좌서부권역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지역별	세부사업	총사업비			
			계	균특	지방비	자담
합 계		19개 사업	5000	4000	988	62
어항시설 사업	동 북	선착장시설	400	320	80	-
	월 정	어항부지포장	60	48	12	-
	행 원	방파제 승상 및 연장	700	560	140	-
	행 원	물양장시설	550	385	165	-
	평 대	어항주변 포장	90	72	18	-
어업지원 시설	세 화	폐유저장소	30	24	6	-
	행 원	직업장, 직판장,탈의장	180	144	27	9
어항진입로정비	행 원	어항진입연결로 확장	100	80	20	-
어업인 복지시설	김 녕	해녀복지시설 증축	150	120	23	7
	김 녕	어선원휴게소	120	96	18	6
	행 원	다목적복지타운	800	640	120	40

어촌환경시설	세 화	공중화장실	200	160	40	-
어촌관광 기반시설	김 녕	해안소공원 조성	550	495	55	-
	월 정	해안소공원 조성	400	320	80	-
	행 원	휴게정자	30	24	6	-
	한 동	휴게정자	30	24	6	-
	평 대	휴게정자	60	48	12	-
	행 원	조경 및 휴게시설	500	400	100	-
	행 원	생태관찰 산책데크	50	40	10	-

< 표 2-9> 대정서부권역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지역별	세부사업	총사업비			
			계	군특	지방비	차담
합 계			5,183	3,500	1,500	183
어항시설	가과	물양장 정비	798	545	253	-
어업지원 시 설	가과	돌미역 건조시설	80	50	20	10
	가과	돌미역 가공장	450	280	120	50
어항진입로 정 비	동일	항포구 및 어장 진입로 보수보강	100	70	30	
어업인 복지시설	일과1	어촌종합센터신축	420	280	120	20
	일과2	어촌체험관리모델링	157.5	105	45	7.5
	동일	어촌종합센터신축	315.	210	90	15
	신도	어촌체험관리모델링	210	140	60	10
	무릉	어촌체험관리모델링	157.5	105	45	7.5
	영락	어촌체험관 신축	315	210	90	15
어촌관광 기반시설	일과1	원 체험장	70	60	2	8
	가과	원담 복원사업	200	140	60	-
	가과	미니해수욕장조성	300	210	90	-
	일과1	담수욕장리모델링	120	80	40	-
	일과2	낙시체험공간조성	262.5	175	75	12.5
	일과2	산책로조성사업	100	70	30	-
	동일	파고라 시설	100	70	30	-
	신도	해수욕장조성사업	200	140	60	-
	신도	원담 복원사업	100	70	30	-
	신도	'도구리' 생태체험장	150	105	45	-
	무릉	해녀문화체험공간조성	105	70	30	5
	무릉	레포츠피싱체험어장	262.5	175	75	12.5
	영락	자리돔낙시체험어장	210	140	60	10

Ⅲ.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비용은 경제적으로도 투자비로 측정된다. 이는 물론 해양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사업에 따른 간접비용이 매우 미미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 그러나 사업에 따른 편익은 여러 가지 상이한 성격을 띄고 있고 발생시기도 다르며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서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우선 발생편익은 개별투자사업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른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어업기반시설인 선착장 건설에 따른 편익은 소득사업의 하나인 횃집 건축에 따른 편익과는 크게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개별사업의 내용 별로 발생 편익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타난 편익 중에는 지역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 외에 종사하는 권역 내의 모든 주민,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 권역 밖의 거주자에게도 파급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권역 내 어촌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안도로의 건설로 말미암아 관광 만족도가 증가한다면 이는 일종의 소비자 잉여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권역

밖에 거주하는 그 관광객(지역외 주민)에게 파급된 편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내용별 직접 편익

사업내용	발생 편익
어업기반시설 (선착장, 방파제, 해안도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생산량(소득) 증가 • 작업시간 단축 • 생활편의 증진 •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감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수준 증가
소득사업 시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대(생산자 잉여) • 시설사용자(소비자) 잉여 증대

- 만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업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와 같이 외부화되는 편익은 투자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한다면 나타난 모든 편익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 개별사업에 따른 편익은 모두 생산자 잉여 혹은 소비자 잉여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 같은 잉여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측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 '소득'이라는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대리변수가 존재하지만, 소비자 잉여의 경우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개별사업에 따른 편익은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분석에 의해서만 그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994년도부터 최근까지 어촌지역에서 수많은 개별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을 통한 편익추정을 전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파급효과 분석이나 소득사업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투자효과를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사회 전체에 파급되는 간접효과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회 전체에 파급되는 간접효과란 투자에 따른 일종의 투자승수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분석을 의미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에 따라 타 산업에 전가되는 생산, 소득(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국가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투자에 따른 거시적인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 이상 앞에서 살펴본 편익, 즉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은 모두 실증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실증적 편익 못지 않게 중요한 규범적 편익이 존재한다. 이는 소득분배의 균형화 효과이다.
- 다만 이러한 규범적 편익은 경제적으로 계량화하여 인식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편익은 제외하고, 인식가능한 편익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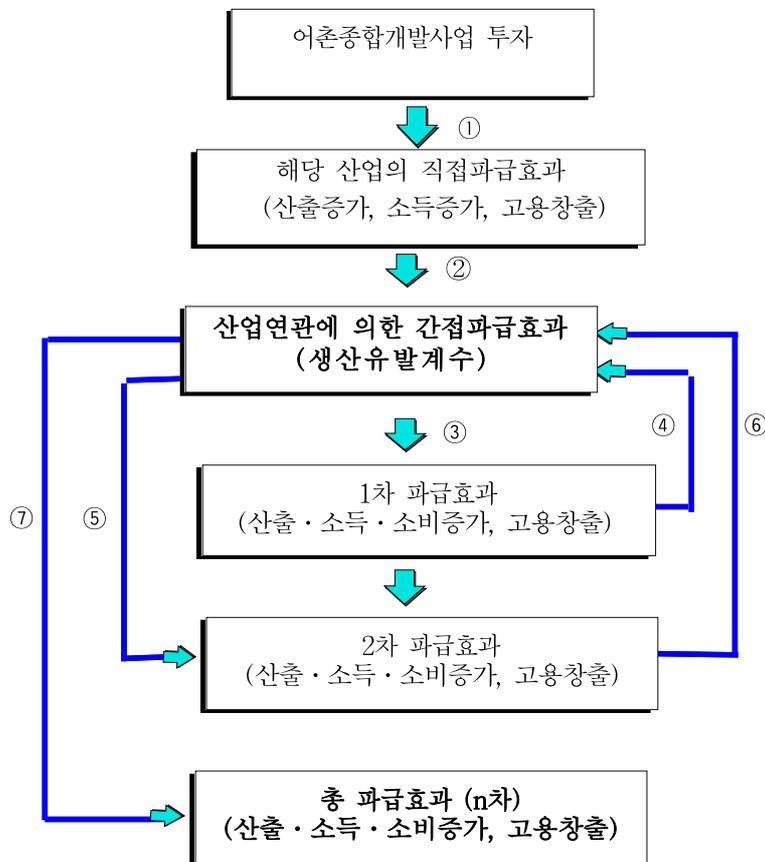
<표 3-2>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편익의 분류

실증적 편익	직접편익	생산자 잉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소득) 증대효과 • 어업외 소득 증대효과
		소비자 잉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 단축 •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저감 • 지역주민 복리증진 •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간접편익	산업연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발 효과 • 부가가치(소득)유발 효과 • 고용유발 효과
규범적 편익	지역간, 계층간 소득분배의 균형화		

2.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과정

-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경로는 <그림 3-1>과 같음.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는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즉,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 외에 노동, 자본 등 기초투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새로운 고용기회와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해외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수입을 유발시킨다.
- 한편, 해당산업의 생산 증가는 이 산업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증가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 소비증가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파급된다. 즉, 각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증가는 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 소비증가가 다시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연쇄과정으로 다른 산업에 n차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경로

- 파급효과의 분석에는 지역 및 국민경제의 흐름을 산업부문간의 투입 및 산출관계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8년에 발표한 '제주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일련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역행렬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AX + F - M = X$$

$$X - AX = (F - M)$$

$$(I - A)X = (F - M)$$

$$X = (I - A)^{-1}(F - M)$$

- 위에서 X는 지역산업 부문별 산출액 열 「벡터」, I는 단위행렬, A는 지역투입계수행렬, F는 지역최종수요 열 「벡터」, M는 지역수입 열 「벡터」, 위의 (I-A)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 한다. (I-A)⁻¹를 생산유발계수행렬 또는 다부문 승수라고 하는데, 역행렬(I-A)⁻¹를 (I-A)⁻¹=B=(b_{ij})_{n×n}으로 표기하면 b_{ij}는 j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i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간접적 생산단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1단위 최종수요 충격(impact)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3-2> 최종수요 충격에 따른 생산유발계수의 추정

-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소비지출이 최종수요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즉, 수식은 $Q=(I-A)^{-1} \cdot F$ 가 되며, 여기서 Q는 신규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F는 투자금액(최종수요)이다²⁾.
- 지역경제에 미치는 노동유발효과는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노동계수(L)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고용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노동계수는 제주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만을 의미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행렬에서 각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지출에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³⁾.
-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소득계수(Y)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소득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소득계수는 제주지역 산업별 피용자들의 소득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유발계수행렬에서 각 대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지

2)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pp.333~337.

3) 이 경우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열벡터(해당 산업은 투자금액(impact)을 넣고, 기타부문은 제로로 넣음)를 곱해서 행으로 합계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출에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
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소득
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3.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에 투자되거나 투자계획 중인 사업
및 투자내역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권역별	대상어촌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균 특	지방비	자 담
계	13개 권역	64개 어촌계	192개사업	43,854	22,833	19,296	1,725
'94~'95	구좌·조천	하도의 3	14개사업	2,556	1,265	1,139 (264)	152
	안덕·대정	하모외 4	28개사업	3,516	1,750	1,575	191
'96	2개 권역	12개어촌계	41개사업	7,115	3,500	3,150	465
	한경권역	고산외 6	22개사업	3,543	1,750	1,575	218
	추자권역	신양외 4	19개사업	3,572	1,750	1,575	247
'97	2개 권역	7개어촌계	14개사업	5,288	2,624	2,495	169
	성산동부	시흥외 3	8개사업	3,519	1,757	1,655	107
	남원서부	하례외 2	6개사업	1,769	867	840	62
'98	2개 권역	9개어촌계	13개사업	2,617	1,303	1,188	126
	남원서부	남원외 3	6개사업	1,746	868	791	87
	애월권역	애월외 4	7개사업	871	435	397	39
'99	2개 권역	3개어촌계	3개사업	3,065	1,530	1,376	159
	애월권역	곽지	1개사업	1,310	655	589	66
	성산서부	온평외 1	2개사업	1,755	875	787	93

2000	3개 권역	12개어촌계	15개사업	3,348	1,674	1,563	111
	애월권역	곽지외 4	7개사업	1,301	651	598	52
	성산서부	삼달외 2	3개사업	924	462	421	41
	남원동부	신흥외 3	5개사업	1,123	561	544	18
2001	3개 권역	10개어촌계	18개사업	2,384	1,181	1,131	72
	성산서부	신평외 2	9개사업	947	471	456	20
	남원동부	태흥1외 3	6개사업	1,082	533	503	46
	조천권역	신촌외 2	3개사업	355	177	172	6
2002	3개 권역	13개어촌계	24개사업	3,088	1,545	1,464	79
	남원동부	신흥외3	7개사업	801	401	382	18
	조천권역	신촌외4	11개사업	1,303	652	620	31
	표선권역	표선외3	6개사업	984	492	462	30
2003	3개 권역	12개어촌계	21개사업	3,709	1,848	1,818	43
	조천권역	신촌외4	9개사업	1,602	799	778	25
	표선권역	표선외2	3개사업	1,020	510	510	-
	우도권역	천진외3	9개사업	1,087	539	530	18
2004	2개 권역	7개어촌계	23개사업	3,663	1,819	1,726	118
	표선권역	표선외 3	7개사업	1,218	609	582	27
	우도권역	천진외 3	16개사업	2,445	1,210	1,144	91
2005	한림서부	월령외 4	10개사업	3,500	2,800	673	27

연도별	권역별	대상읍명	사업비	어 촌 계 명	비고
계	3개 권역		15,000	20개 어촌계	
2007	구좌 서부권역	제주시 구좌읍	5,000	8개 어촌계 (세화, 평대, 한동, 행원, 월정, 동북, 동김녕, 서김녕)	
2009	대정 서부권역	서귀포시 대정읍	5,000	7개 어촌계 (동일, 일파1·2, 무릉, 신도, 영락, 가파)	
2012	한림 동부권역	제주시 한림읍	5,000	5개 어촌계 (귀덕1·2리, 용운동, 수원, 한수)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94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된 총투자비 43,854백만원과 2007년부터 투자중이거나 투자계획 중인 총투자비 15,000백만원을 합한 총 투자액은 58,85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 따라서 이를 '94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비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와 2007년 이후 투자비에 의해 경제파급효과 및 총 파급효과로 구분지어 분석해 보았다.
- 분석결과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투자비 58,854백만원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79,688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787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1,5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경제파급효과(1994~2012)

구 분	효 과	지역경제파급효과
'94~'05	투자액(백만원)	43,854
	생산유발효과(백만원)	59,378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32,627
	고용유발효과(명)	1,140
'07~'12	투자액(백만원)	15,000
	생산유발효과(백만원)	20,310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11,160
	고용유발효과(명)	390
합계 '94~'12	투자액(백만원)	58,854
	생산유발효과(백만원)	79,688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43,787
	고용유발효과(명)	1,530

주 : 2012년 투자예정 한림동부권역 사업비 50억을 포함.

IV. 문제점

1.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어촌종합개발 대상사업을 어촌계의 자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어촌계 자부담이 필요 없는 공공사업 부문으로 사업집행주체는 시도 또는 시군이 된다. 제주도의 경우는 '96년도까지 군에서 집행하다가 '97년도부터는 제주도에 직접 집행하고 있다.
- 다른 하나는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촌계의 재산이 되는 사업으로 소득사업과 사무실 등 복지시설 등이다. 이 사업은 어촌계가 직접 집행한다.
- 그러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집행에서부터 운영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어촌계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에서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1) 기본계획 수립

- 권역별·어촌계별 기본계획수립은 사업추진 전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전국단위 권역별로 전문용역기관(농어촌개발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일부 권역은 사업집행주체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도 있음) 하고 있으며, 어촌계별, 사업별로 사업비까지 결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국단위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에 현실과악이 부족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과거에 지원된 유사 사업위주로 사업종목을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개발 등에는 한계가 있다.

2) 사업종목 선택의 제한

-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원목적은 어촌지역에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을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득사업에서 어업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업종목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시설 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99년도부터 살포식 종묘방류, 투석, 증식장 조성 등 자원조성사업과 해면을 포함한 육상양식장 개발사업 등이 제한되었다.
- 또한 2001년도부터는 식당, 민박 등 주요 어촌계 소득원 사업까지 제한하여 사실상 어업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원목적 취지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후순위의 사업권역 어촌계 등에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3) 사업집행 및 부지 확보난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로 지원되는 공공시설부문과 어촌계의 재산이 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공시설부문은 어촌계 자부담 없이 사업집행 주체가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한하여 95%보조와 어촌계가 5%를 부담토록 하여 집행하고 있다.
-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 및 계약업무 처리미숙 등으로 사업기간을 일실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 특히 부지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는 어촌계 자체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어촌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확보가 어렵고 대체부지로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변 연안의 경관 및 환경문제와 관련되면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부분 사업종목 선정에 있어 어업기반시설 위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4) 주요 사업별 문제점

-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지원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실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심으로 그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수중투시선

- 수중투시선은 어촌관광소득사업 일환으로 하도어촌계 2척, 사계어촌계 1척을 시범모델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일본의 경우는 어촌관광사업으로 보편화된 사업임에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조의 기술적인 문제, 선박의 주요부분의 재료확보와, 건조후의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경영능력의 문제, 해양환경특성상 기상악화에 의한 운항일수 부족, 지역어업인(해녀회)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장기휴업과 선박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계리 수중투시선의 경우는 선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여 인근 펜션의 카페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2) 축제식양식장

- 용수어촌계에 지원된 축제식양식장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이나 적지 선정, 시설공법의 잘못으로 간조시의 수면 형성 부족, 조류의 소통제한, 여름철의 고수온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수산물식당 및 숙박시설

-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는 식당 및 숙박시설은 대표적인 소득사업으로 어촌계에서도 가장 희망하는 사업이다. 부지가 확보된 어촌계에 한하여 희망할 경우에 2001년도까지 대부분 지원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기존 유명관광지 인접지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영이 양호한 편이나,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지원된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규모 및 투자비에 맞지 않게 저가임대 운영중

이다.

- '96년도에 추자권역에 지원한 숙박시설의 경우 동일 권역에 입도 관광객 수요를 고려치 않고 신양, 대서, 묵리 어촌계에 유사시설인 숙박시설을 같은 시기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신양어촌계의 관광낚시센터 및 숙박시설은 시설규모 면에서도 단일 시설로서는 수요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커 시설 후 내부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자금충당이 어려워 준공과 동시에 저가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4) 가공시설 및 냉동·냉장시설

- 수산물가공 및 냉동·냉장시설은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목적으로 지원된 시설로 하모어촌계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추자면 영흥어촌계의 염장탱크시설 등이다.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멸치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원된 시설이나 멸치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이 되더라도 그 양이 일정치 않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냉동·냉장시설도 원료공급이 어려워 일부 어촌계의 경우 어선어업 미끼 저장 등 임시 공동보관시설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5) 관광낚시선

- 관광낚시선은 어한기에 어촌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바다낚시 여건이 되는 추자, 고산, 용수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어촌계의 여건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임대운영 중이다 특히 동 사업은 어촌계 여건상 직영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종목 선정 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집행 및 제도적 문제점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의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비율이 국고보조 50%, 교부세 45%(지방비로 편성), 어촌계 부담 5%(공공시설을 제외한 어촌계의 재산성 사업의 경우)로 부담 추진되는 사업이나 정부가 만든 획일적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권역별 사업비 집행의 제한

- 사업집행지침에 의하면 권역당 3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사업내용 변동에 의하여 권역간 사업비 조정 등이 불가피 함에도 이를 제한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 등 예산의 탄력적 집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사업종목 선택의 전국적·획일적 제한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당초 지원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성과가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종목이 있음에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제주도의 경우 마을어장에 전복종묘방류, 투석,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등은 과거부터 그 성과가 입증되었고 각 어촌계에서도 가장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타 시도 유사사업의 부실사례를 들어 제외를 시키고 있고, 육상양식장인 넙치양식장의 경우도 민간의 경우 고소득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음에도 어촌계의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유명관광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어촌관광소득사업인 어촌민박 및 식당 등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선별 지원함이 타당함에도 지침상 제한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집행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업집행의 지연

- 권역별 어촌계별로 사업기본계획이 당해년도 사업추진시 그간 여건변화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정부에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기를 놓쳐 당해 연도 사업 마무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4) 경영 및 관리의 미흡

- 사업경영 책임자(어촌계장)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등이 없어 경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소득사업에 대한 홍보 등 방문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다.
- 어촌계가 공동조직체로서 책임경영이 어렵고 시설 후의 사후관리 주체인 시도의 행정력 지원에도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완료 후 운영에 대하여는 어촌계장과 일부 임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 여타 어촌계원들은 운영에 있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V. 개선방안

1. 경영측면의 개선방안

1) 어촌계 자구노력

- 어촌계 소득사업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어촌계의 의지 및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어촌계의 자구노력에 의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공동조직체로서 사업관리에 대한 애착과 소득분배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어촌계에서 자구노력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표자인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모든 어촌계원이 소득사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어촌계장은 어촌계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열성적인 지도자와 훌륭한 아이디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을 때만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 (2)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업별로 경영전문가를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아 경영마케팅에 반영하고 경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3)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저리 운영자금 조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어촌계 단위의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집행과 결산에 대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5) 주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행사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구상이 필요하고 또한 주변 우수 관광지와 연계한 그 지역의 대표적 패키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6) 고객관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번 다녀간 고객에 대한 리스트 확보를 통하여 이들이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인제도, 고향 향토 특산물 보내기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 어촌계 자구노력에 대한 부실사업의 정상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행정적 개선책이 반드시 동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 개선책은 어촌계의 자구노력 다음으로 부실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1) 투자사업의 성과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어촌계 조직은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조직체로서 경영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로서 소득사업 경영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인 경영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어촌계별로 관할 수협직원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 경영,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2) 어촌계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사업 등을 발굴

이용객 유치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고유의 축제(이벤트)행사와 연계한 고객유치 전략과 바다공간을 중심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축제, 바다낚시대회, 수산물품축제 등을 통하여 어촌계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어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계획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소득사업에 대한 홍보기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집행주체에서는 지원된 소득사업에 대하여 지역별 관광잠재력과 연계한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 시 사이버관광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모든 홍보 채널을 동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4) 기 지원된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여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초 지원목적대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는 사후관리 지침 등을 변경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다.
- (5) 토지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문제, 지방세 징수 등은 관련 감면조항 등의 법적 제도를 검토하여 어촌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2. 부실사업의 개선방안

1) 운영 부실사업의 개선

- 현재 임대, 또는 휴업 중인 소득사업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통하여 전문 경영인과 공동경영을 통한 경영기술 및 경영경험 축적 후 어촌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운영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은 가능한 짧게 계약을 맺도록 한다. 또한 대체사업 이용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희망 어촌계원들의 소규모 그룹에 의한 협업운영 방법(자금능력 및 사업의욕 고려)을 유도하고, 유경험자를 고용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유도한다.

2) 사업종목 선택의 개선

- 기본계획 용역단계에서부터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역여건, 사업성 및 수익성, 전망, 어촌계의 경영능력, 어촌계 평가자료(수협자료), 인적자원, 어촌계의 사업추진 능력, 협업가능성, 운영비 조달 등 재정상태 등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종합적 검토 후에 사업을 선정·확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장소 선정의 개선

- 토지공간의 여유가 없는 어촌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한 장소 선정에는 애로점이 많다. 따라서 부적절하게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보완, 주변 환경정비 및 확충을 통한 다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권 내에서 용도변경에 의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시설물의 사후관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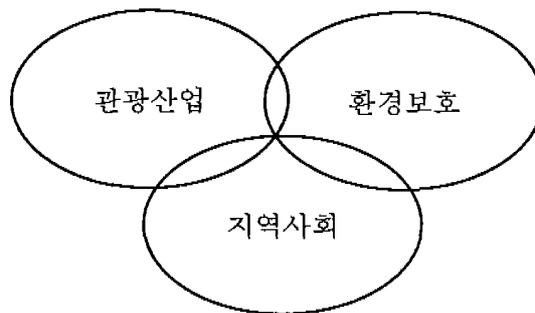
- 시설의 사후관리 소홀로 시설이 방치되어 어촌환경 및 미관을 해치거나 시설의 내구년수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재방문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일단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부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운영주체의 시설관리는 당연한 것이며, 시설관리를 보면 그 사업의 운영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설물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1) 사업책임관리자(어촌계장) 및 어촌계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소득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된 사업인만큼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보조사업의 시설물은 바로 어촌계의 자산이고, 후손들의 자산이기도 하고 95% 보조사업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어촌계 단위의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계획, 집행, 시설후의 운영, 시설물의 관리까지 위원회를 통하여 투명성 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3) 어촌계 단위의 시설물 점검 강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한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기한 내 시공업체로부터 보수이행 조치하고, 이익금에서 매년 일정액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적립하고 규모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4) 시설이용 및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이용방안 등 다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 시설유지 및 운영자금 활용은 최대한 정부, 자치단체, 수협 등에 지급하는 저리융자금을 차입 활용하여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검토

-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연·문화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법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으로 통합시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 한편 관광개발 분야에서도 기존의 시설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자원의 보존과 함께 자연 속에서 관광을 체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개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 즉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기존의 관광산업,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이 각자 독자적 위치에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서도 기존의 개별 주체 위주의 개발이나 시설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이러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5-1]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조

- 한편 어촌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개발로 자리잡을 수 있다.

<표 5-1> 어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구분	개발원칙	개발목표
경제적 측면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측면	형평성	개발의 형평성 촉진
환경적 측면	보 전	생물다양성 보전

-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포함하는 개발대안으로는 책임관광, 생태관광, 연성관광, 녹색관광 등이며, 어촌지역에서의 체험활동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의 한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어촌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은 생태관광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시설의 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모형이 되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어촌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원칙의 준수와 함께 주체별 역할의 수행 또한 중요한 항목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정책적 기준의 마련과 함께 어촌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편 지역주민인 어업인들은 방문객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 이러한 역할체계가 올바르게 확립됨과 함께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편의시설의 제공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산업발전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표 5-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내용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기준수립, 인센티브 제공 • 자연보전과 문화보전의 지원 및 장려
지역사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서비스 • 지역상품개발 • 문화적 상호작용
지역사회에 대한 관광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개선 • 기반시설 개선 • 고용창출 • 지역산업 발전 • 환경교육

<표 5-3> 어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대 상	내 용	비고
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유통이 되도록 설계 	
어촌관광시설 환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횃집, 주택 등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로 어장 및 관광지내 수질환경 개선 • 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촉진 	
체험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관광객의 유입을 통제하여 적정 수준유지 • 개방구간과 보전구간을 설정 및 개방기간 설정 	
바다낚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봉 등의 투기 억제 및 떡밥의 과다사용을 자제시켜 적조 발생 등 환경오염 예방 • 인공어초 투하, 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 촉진 	
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의 침식을 막도록 인근지역 구조물 설치 시 검토 • 배후 송림, 사구 등의 훼손 방지와 보호 조치 	

4. 어촌관광정보망 확보방안

- 최근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수집된 관광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여행계획을 수립하며,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관광을 체험하려는 관광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어촌관광활동의 기초가 되는 관광정보와 이의 전달체계가 부족하여 어촌관광의 높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는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여행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어촌관광의 경우 이들 정보에 어촌이나 바다와 관련된 관광활동의 일부를 추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어촌관광을 종합화시킨 관광사이트는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들이 제공하는 어촌지역의 관광정보는 단편적인 내용을 나열시키거나 과거의 자료가 수록되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제주 지역 어촌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종합적 관광정보사이트 구축의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 제주지역 어촌들의 관광자원 및 관광프로그램 연계 관광상품 등에 대한 어촌관광 DB를 구축하여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어촌관광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통한 종합적 어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예약, 정보제공, 상품구매 등을 유도하고 어촌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의 어촌관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1단계에서는 기존 정보망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나간다.
- 최종적으로 어촌지역에서는 어촌의 전문 PC요원을 교육하여 운영요원으로 지정 및 교육시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한다.

5. 어업인의 관광객 수용능력 강화

- 어촌지역의 경우 농촌지역보다도 더욱 다양하고 동적인 관광활동 자원과 함께 체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시켜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어촌지역의 관광수요에 비하여 어촌의 인구는 노령화·부녀화되고 있어 어촌관광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어업인들은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시설에 대한 경영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을 단계적으로 달성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 전문 유관기관, 대학 등의 지원시스템 구축
 - 수협, 지자체 등의 역할분담에 의한 지원 참여
 - 어업인 서비스 메뉴얼 개발 및 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주민들의 역할분담과 이에 맞는 서비스 교육의 지속적 추진

참고문헌

- 농림부, 『권역별 어촌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7. 1.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우수사례집』, 해양수산부, 1999.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1999. 12.
-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4. 6.
- 해양수산부,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2000.
- 해양수산부,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2001.
- 해양수산부,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2002.
- 양희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부 록 □

1.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설
2. 제주지역 주요 해양수산 통계

1.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설

1. 목 적

- 가.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어촌 개발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나. 어업 및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

2. 추진방향

- 가.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지원
 - 나. 선정된 권역의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원 개발,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되,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을 중점 지원
 - 다. 권역별로 타 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 ※ 선정된 권역은 미리 권역의 적정규모, 합리적인 투자방향 등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지원

3. 투자계획 <전국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8까지	'99	2000	2001~2004
권역수	160	61	24	32(24) 67
사업비	543,170	219,270	34,940	37,352 251,804
국고	271,585	109,635	17,470	18,676 125,804
지방비	244,426	98,671	15,723	16,808 113,224

자 담 27,159 10,964 1,747 1,868 12,580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지원대상 : 어촌계

(2) 지원규모 : 권역당 3,500백만원

(3) 사업기간 : 계속사업권역('98~2000년, '99~2001년, 3개년)
신규사업권역(2000~2002년, 3개년)

(4) 지원율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다. 지원절차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전 미리 각 시·도의 대상권역 중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함. 단, 사업집행주체가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실시한 권역은 제외함

(2) 사업집행주체는 권역별 기본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 권역의 투자 규모를 감안, 세부대상사업을 투명성 있게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3)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대상사업 중 어촌계 시행사업은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거사업자를 선정함. 단, 권역의 범위가 1개 시·군·구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군·구의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체의 심의만을 받아 결정

라. 권역별 세부대상사업의 계획수립

- (1) 사업집행주체는 선정된 권역에 대하여 어항개발 등 각종 수산진흥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어촌종합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관광, 유통, 교통 등 지역주민의 생활거점인 항·포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 가능한 한 기반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소득원 시설도 당해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할 수 있음
- (2) 세부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서의 “어촌종합개발 대상사업”에 한함. 다만, 여건의 변화로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
 - ① 각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의 “어촌종합개발 대상외사업” 또는 “타수산분야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② 각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3)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각 권역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4) 세부대상사업 선정시 유의사항
 - ① 다수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

- ② 권역내 이미 구비된 각종 수산시설(특히 어민회관, 어업인종합센터 등 유사시설)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어민회관, 종합센터 등 유사시설 건립이 불가피할 경우, 사무실, 신용점포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어민복지 또는 소득시설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함.
- ③ 횃집, 숙박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어촌계 운영 소득원시설은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인구이동, 어촌계의 사업계획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인정되고 어촌계 직영(다수 어업인의 운영 참여 가능한 경우 포함)이 가능한 경우 등에만 대상사업으로 신중히 선정하여 완공 후 부실 운영·관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④ 종묘방류, 투석 등 자원조성 및 살포식양식 등은 어촌계 재투자 의욕고취 등을 위해 어민자율사업, 또는 시·도(시·군)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어촌종합개발 사업에서 제외함
- ⑤ 지정어항(제1·2·3종어항)의 기본시설은 어항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함.

마. 세부대상사업 보고 및 협의

사업집행주체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사업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리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준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바. 사업비 및 자기자금

(1) 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종묘구입비, 작업

비, 감리, 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이를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로 하여 지원율에 따라 지원(기준 보조율 준수)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 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2)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공사업부문 자부담금은 반드시 사업집행주체의 부담으로 함.
- (3)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 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
- (4) 어촌계 집행사업의 경우 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시 어촌계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자금은 이를 투명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 총회의결사항,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해야 하며 보조금확정(정산)시에는 동 금액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사. 사업의 수행

- (1) 공공사업부문은 사업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중 사업의 수행내용 및 사업의 특성상 어촌계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집행주체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고 선급금, 기성급, 정산금 등 사업비 지급시 입회·확인하여야 함.

- (2) 제(1)목의 규정 외에 어촌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법인어촌계계약규정(예)에 따라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 결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 (3)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법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에 조사, 기술지원 및 중요공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5)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신규사업 예정 어촌계의 계장 또는 임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의 교육을 사업 전 이수하여야 함.

아. 보조금 사업비 집행

- (1)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사업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2) 자부담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

(3) 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현지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어촌계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확정

5. 사후관리

가.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 주체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함.

나.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복지사업의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외의 생산기반시설물 등의 관리기간은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함.

다. 사업집행주체는 어촌종합개발사업관리부를 비치하고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거 관리기간의 종료될 때까지 매년 익년 1월말까지 관리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단위사업 완공 후 매반기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운영·관리시 필요한 경영지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함.

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활어횃집, 숙박시설, 유통, 가공시설 등 어촌계 운영 소득시설을 관계규정에 의거 임대 승인할 경우에는 지원목적 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 당초 지원어촌계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수산물직매장, 특산품판매장 등 유통시설은 지역어민이 생산한 수산제품의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해 어촌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우선수집, 판매하는 등 수산물 유통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사. 어촌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어촌계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행정사항

가. 공사감독 및 보고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계가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마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책임부여
- (2) 사업집행주체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사항을 감독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매월말 현재 사업공정과 전망,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고토록 조치
- (3)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보조금 교부 확정시 확정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제주지역 주요 해양수산 통계

1) 어가인구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어가수	구성비 (%)	총인구	어가인구	구성비 (%)
2005	204,635	6,698	3.3	559,747	18,612	3.3
2006	208,424	6,924	3.3	561,695	19,388	3.5
2007	211,853	7,046	3.3	563,388	19,186	3.4
2008	214,681	6,642	3.1	565,519	18,464	3.3

주 : 총가구 및 총인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임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

2) 어 선 현 황

(단위 : 척, M/T)

구 분	계		동 력 어 선		무 동 력 어 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005	3,239	21,510.91	3,232	21,505.19	7	5.72
2006	3,025	20,632.68	3,018	20,626.96	7	5.72
2007	2,780	19,790	2,773	19,785	7	5
2008	2,463	18,806.18	2,457	18,802.33	6	3.85
제주시	1,276	10,039.16	1,272	10,036.24	4	2.92
서귀포시	1,187	8,767.02	1,185	8,766.09	2	0.9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3) 항 만 현 황

(단위 : 천m², m)

항만명	구 분	지정	수면적	수심	주요화물
제주항	무역항	1968. 1.	3,504	(-)2 ~(-)11	유류, 시멘트, 감귤
서귀포항	무역항	1971. 5.	180	(-)3 ~ (-)6	모래, 유류, 감귤
화순항	연안항	1991. 10.	2,109	(-)2 ~(-)7.5	모래, 유류, 비료
성산포항	연안항	1968. 1.	1,104	(-)2 ~(-)6.5	모래, 감귤
한림항	연안항	1968. 1.	2,892	(-)2 ~(-)5.5	모래, 시멘트, 감귤
애월항	연안항	1995. 12.	101	(-)1.5~ (-)5	일반생필품, 모래
추자항	연안항	1998. 5.	829	(-)0.5~(-)3.5	일반생필품, 수산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4) 어 항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항 수	어 항 명
계	99	
국가어항	6	도두, 모슬포, 위미, 김녕, 하효, 신양(추자)
지방어항	18	우도, 조천, 가과, 사계, 대포, 표선, 종달, 신창, 세화(구좌), 신양(성산), 화북, 강정, 법환, 고산, 신천, 귀덕1리, 하귀1리, 태흥2리
어촌정주어항	75	제주시 37(10) 서귀포시 26(2)

※ 어촌정주어항 : 도서낙도어항 12개소 포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

5) 양 식 어 업

5-1. 해면양식

(단위 : ha, M/T, 백만원)

구 분	품 종	개 소	면 적	양 식 수면적	생 산 능 력	2008생산	
						수 량	금 액
합 계		342	274.4	200.7	22,491	25,202	222,376
어류양식		298	194	122.7	22,216	25,028	215,048
육상수조식	넙치, 돌돔	290	178	121	22,204	25,027	214,998
가두리식	돔류, 능성어	7	13	0.2	2	1	50
축 제 식	참돔, 기타	1	3	1.5	10		
패류 양식		42	73.3	70.9	175	139	7,311
육상수조식	전복, 해삼	22	5.4	3	63	28	5,911
수 하 식	전복	2	8	8	2	100	1,000
바 닥 식	전복	18	59.9	59.9	110	11	400
해조류 양식		2	7.1	7.1	100	35	17
수 하 식	다시마	2	7.1	7.1	100	35	17

5-2. 내수면 양식

(단위 : ha, M/T, 백만원)

구 분	개 소	면 적	양 식 수면적	생 산 능 력	2008생산	
					수 량	금 액
합 계	7	6.4	4.6	280	76	1,394
뱀 장 어	3	5.2	4.36	225	71	1,294
기 타	4	1.2	0.24	55	5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6) 수 산 물 생 산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계	어 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 타
2005	수 량	79,897	74,260	3,178	1,245	1,214
	금 액	438,949	417,842	14,271	3,641	3,195
2006	수 량	88,520	78,987	4,280	3,762	1,491
	금액	515,923	483,709	19,273	7,934	5,007
2007	수 량	96,684	89,362	1,421	4,414	1,487
	금액	553,872	540,576	7,823	4,032	1,441
2008	수 량	88,794	85,025	2,191	204	1,374
	금액	535,132	522,397	6,437	738	5,56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

7) 수 산 물 수 출

8-1. 종류별

(단위 : M/T, 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247	61,992	5,724	54,524	4,503	42,852	4,939	44,395
활선어	5,307	49,771	3,641	42,465	2,986	35,019	3,593	37,099
패 류	1,434	8,246	1,414	7,163	1,079	4,063	986	4,141
해조제품	505	3,966	665	4,808	351	2,665	320	2,767
기 타	1	9	4	88	87	1,105	40	388

8-2. 주요 품목별

(단위 : M/T, 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 라	1,395	7,495	1,404	6,791	1,077	3,986	986	4,141
성게알	-	-	-	-	-	-	-	-
복 어	-	-	-	-	3	138	22	501
넙 치	5,307	49,771	3,641	42,465	2,983	34,879	3,570	36,597
전 톳	378	3,283	369	3,111	199	1,841	154	1,893
삼 치	-	-	-	-	-	-	-	-
갈래곰보	10	66	8	51	49	311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

8) 주요 어종별 생산추이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옥 돔	1,287	14,543	971	12,856	1,685	20,267	1,496	16,428	953	15,346
조기류	4,620	39,792	7,683	46,367	10,583	46,326	10,578	51,906	9,127	37,264
갈 치	16,483	133,136	21,677	163,982	23,271	164,076	25,308	186,231	31,758	232,492
복어류	29	381	40	278	80	593	13	125	11	64
멸치류	3,946	1,218	16,166	3,747	11,663	2,943	10,789	2,872	9,346	2,556
고등어류	2,835	5,376	2,901	4,655	1,860	4,249	3,289	5,591	2,695	4,752
삼치류	649	2,433	910	3,054	573	1,705	863	2,921	649	2,570
방 어	509	1,560	191	1,324	253	1,705	388	2,276	364	1,741
양식넙치	17,915	177,694	20,371	174,340	21,892	223,377	23,397	240,107	25,027	214,998
전복류	41	2,864	54	3,745	96	5,840	34	2,152	24.9	1,186
소 라	1,813	10,475	1,445	6,334	1,506	6,211	1,326	4,267	1,640	6,369
오징어류	2,117	4,267	1,523	3,007	2,125	4,519	1,251	3,651	778	2,460
툰	1,755	1,392	427	1,156	578	699	1,358	880	294	1,020
천 초	774	2,679	693	2,207	2,762	6,761	3,056	3,152	514	1,798
갈래곰보	11	23	-	-	20	49	-	-	23	60
성 계	37	1,469	43	1,512	65	273	54	2,005	66	2,16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

연 구 진

연구책임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인쇄일 / 2009. 11.

발행일 / 2009. 11.

발행인 / 유덕상(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8-89-6010-135-7 9333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